제222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

2020년도 제2회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

검 토 보 고 서

2020. 8. 28.



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

2020년도 제2회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

1. 제안경위

가. 의안번호 : 제2005호

나. 제 출 자 : 금천구청장

다. 제출일자 : 2020. 8. 19.(수)

라. 회부일자 : 2020. 8. 19.(수)

2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제130조, 「지방재정법」제45조에 따른 2020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금천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3. 추경예산 규모

- 최종예산 724,142백만원(일반 709,767백만원, 특별 14,375백만원)

(단위 : 백만원)

_	분		예산액	기정액				2회추경	비고	
Т		ᄑ		সাম্প	소계	당초예산	간주처리	1회추경	(안)	-1 -1.
	;	계		724,142	698,776	527,952	143,761	27,063	25,366	
일	반	회	계	709,767	685,798	515,105	143,697	26,996	23,969	
특	별	회	계	14,375	12,978	12,847	64	67	1,397	
	의료	급여기	기금	495	449	448	1	-	46	
	. –	└득지 안정기		890	461	461	-	-	429	
	주	차	장	12,990	12,068	11,938	63	67	922	

○ 분야·재원별

(단위 : 백만원)

п н		합계(A+B)	일반회계(A)	특별회계(B)	ub
구 분	세 부 내 역	예산액	예산액	예산액	巾
	계	25,366	23,969	1,397	
	계	17,538	17,538	-	
코로나19 대 응	자체사업	15,590	15,590	-	
	보조사업	1,948	1,948	-	
	계	7,150	5,214	1,936	
현 안 사 업	투자사업	3,936	3,936	1	
	기타 현안사업	3,214	1,278	1,936	
	계	-5,383	-4,776	-607	
감 추 경	코로나19로 중단·축소·변경된 사업	-3,180	-3,147	-33	
a 1	기타 사업	-1,627	-1,073	-554	
	행정운영경비 (출장비, 급량비 등)	-576	-556	-20	
보조사업	보조금 확정내시 반영	-2,479	-2,479	-	
보 조 금 반 납 등	반환금 등 기타	8,540	8,472	68	

4.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 편성현황

(단위 : 천원)

	부 서	명		최종예신액(안)	기정액	1회 추경(안)	증감율(%)
총			계	724,142,373	698,776,856	25,365,517	3.63%
일	반	회	계	709,767,406	685,798,331	23,969,075	3.49%
행정	J 재 경 우	원 회	계	252,719,249	240,567,378	12,151,871	5.05%
민원	원 감 사	담 당	관	206,138	221,608	△15,470	△6.98%

5. 검토의견

○ 민원감사담당관 추경 사업 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번	부 서 명	세 부 사업명	사 업 개 요	최종예산 (A+B)	기정액 (A)	2차추경(안) (B)
1	민원감사 담 당 관	인권도시 금천실현	• 주요내용 - 인권기반 도시 금천 실현 (인권위 12명 구성, 인권교육 실시) ⇒ 코로나19로 인권위원회 운영 조정	34,460	45,000	-10,540
2	민원감사 담 당 관	구민 고충처리 위원회 운영	 주요내용 고충민원 조사하여 권익 적극적 보호 지원(위원회 7명 구성) ⇒ 코로나19로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조정 	13,050	17,980	-4,930

○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2억 2,160만 8천원에서 코로나19로 인권기반 도시 금천 실현 인권 위원회를 운영 조정함에 따른 1,054만원과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 조정으로 493만 원 등 1,547만원을 감액하여 총 2억 613만 8천 원임. 「지방자치법」제127조 및 제130조와 「지방재정법」제45조 규정에 근거한 적법한 것으로 사료됨.

붙임 : 관련 법령 1부.

붙임

관련 법령

□ 지방자치법

[시행 2017. 7. 26] [법률 제14839호, 2017. 7. 26, 타법개정]

- 제127조(예산의 편성 및 의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·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, 시·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의 예산안을 시·도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, 시· 군 및 자치구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.
 -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.
 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.
- 제130조(추가경정예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
- 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127조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.

□ 지방재정법

[시행 2019. 4. 17] [법률 제15803호, 2018. 10. 16, 일부개정]

- 제45조(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(追加更正豫算)을 편성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,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
 - 1. 시 · 도의 경우 국가로부터, 시 · 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 · 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
 - 2. 시·도의 경우 국가로부터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·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·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